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5. 7 선고 2019가단43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나56732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5. 7 선고 2019가단4389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림

담당변호사 박경, 이경훈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병준

3. D 주식회사

특별대리인 E

4. F

소송대리인 G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 표 ‘말소(회복)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 주위적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예비적으로, 별지 제2 표 ‘등기 접수 번호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정리한 표

(1999. 7. 5.) H-I 약정: 분할 전 거제시 J면(이하 생략) K 대 5,341㎡ 중 1,400평을 양도		
(1999. 7. 23.) H-원고 약정: 그 중 1,000평을 양도		
2002. 1. 10.	원고의 가치분등기: 3,305.78/5,341 지분	
2002. 3. 21.	H의 가치분등기: 4,628.12/5,341 지분	
2002. 5. 15.	피고 B의 가등기: 1,653/5,341 지분	
2002. 8. 20.	L의 가등기: 3,688/5,341 지분 → 2007. 4. 30. 피고 B에게 이전등기	
(2003. 7. 11.) H, 원고 - I 재합의: H(600평), 원고(800평)		
(2003. 8. 2.) H-I 소송 화해권고결정 확정: 1,983.48/5,341 지분(2003. 12. 30. 경정된 것)		
(2003. 12. 27.) 원고-I 소송 판결 확정: 2,644/5,341 지분		
2003. 12. 29.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2,644.63/5,341 지분	
2003. 12. 31.	H의 소유권이전등기: 2,289/5,341 지분	
2003. 12. 31.	H → 피고 M 소유권이전등기: 1,983/5,341 지분	
2004. 1. 28.	H → 피고 M 소유권이전등기: 0.6/5,341 지분	
2004. 1. 28. (공유물 분할)	N리(이하 생략) K 대 3,357.4㎡	O 대 1,983.6㎡ (M 단독소유)
2007. 3. 20.	원고, H의 가치분등기 말소	원고의 가치분등기 말소 (H의 가치분등기에 대하여는 취소)

			미신청)	
2007. 5. 10.	피고 B의 본등기 → 원고, H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 말소		피고 B의 본등기 →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 말소	
2007. 5. 16.			① 피고 B → 피고 D 소유권이전등기: 2,671/5,341 지분 (2007. 10. 9. 경정: 2,039.17/5,341) ② 피고 B → 피고 C 소유권이전등기: 2,671/5,341 지분 (2007. 10. 9. 경정: 1,012.83/5,341) <당시 지분 등기 상황> 피고 D: 2,039.17/5,341 피고 C: 1,012.83/5,341 M: 2,289/5,341	
2008. 5. 7. (토지분할)	K 대 1,704.6㎡		P 대 1,652.8㎡	
2008. 6. 3. (토지분할)	K 대 1,043.6㎡	Q 대 661㎡		
2008. 12. 3. (토지분할)			O 대 991.8㎡ (이 사건 제1토지)	R 대 991.8㎡ (이 사건 제2토지)
2010. 11. 16.				M 지분 전부, 피고 C 지분 전부 → 피고 F <지분 등기 상황> 피고 D: 2,039.17/5,341 피고 F: 3,301.83/5,341
(2018. 1. 4.)	원고, H의 피고들, G에 대한 통영지원 2017가합45 판결 확정			
(2018. 8. 2.)	원고, H의 피고 F에 대한 통영지원 2018가단519 판결 확정			
2019. 3. 25.			피고 D, C, B 각 지분 경정	피고 D, C, B, F 각 지분 경정
2019. 6. 11.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회복등기

나. 주식회사 H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I, 원고와의 약정

1) 주식회사 H회사(이하 ‘H’라고 한다)은 1999. 7. 5. I로부터 분할 전 거제시 N리(이하 ‘N리’라고

한다) K 대 5,34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1,400평을 양수하기로 약정(이하 ‘H-I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같은 달 23. 원고에게 그 중 1,00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H-원고 약정’이라고 한다)하고, 이에 대하여 I의 승낙을 받았다.

2) 원고는 H-원고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2. 1. 10. 분할 전 토지 중 3,305.78/5,341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원고의 가처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H는 H-I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2. 3. 22. 분할 전 토지 중 4,628.12/5,341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H의 가처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B와 L의 가등기

1) 피고 B는 2002. 5. 15. 분할 전 토지 중 1,653/5,34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피고 B의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L은 2002. 8. 20. 분할 전 토지 중 3,688/5,34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피고 B의 가등기와 함께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한편, 피고 B는 2007. 4. 30. L의 위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H, 원고와 I의 재합의

H와 원고는 2003. 7. 11. I과, 원고가 분할 전 토지 중 약 800평을, H가 약 600평을 각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H, 원고와 I 사이 소송, H의 지분 처분

1) 울산지방법원은 2003. 7. 14. 위 법원 2003가단10857호 사건(이하 ‘H-I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I은 H에게 분할 전 토지 중 600/1,400 지분에 관하여 1999. 7. 5.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03. 8. 2.경 확정되었는데, 2003. 12. 30.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중 ‘600/1,400 지분’이 ‘1,983.48/5,341

지분'으로 경정되었다.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 한다)은 2003. 12. 4. 위 법원 2003가합1386호 사건(이하 '원고-1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1은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2,644.63/5,341 지분에 관하여 2003. 7. 1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12. 27. 확정되었다.

3) 위 각 소송의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는 2003. 12. 29. 분할 전 토지 중 2,644.63/5,34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H는 2003. 12. 31. 2,289/5,34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H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4) H는 2003. 12. 31. M에게 2003.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H 지분 중 1,983/5,341 지분에 관하여, 2004. 1. 28. 0.6/5,34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H의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나머지 306/5,341 지분은 공유물분할에 따라 이 사건 제1, 2 토지가 피고 M의 단독소유가 됨으로써, 2004. 1. 28. 피고 M에게 이전되었다).

바. 토지 분할

분할 전 토지는 2004. 1. 28. 공유물분할에 따라 K 대 3,357.4㎡와 O 대 1,983.6㎡로 분할되어 O 대 1,983.6㎡가 M의 단독소유로 된 것을 시작으로 그 후 여러 차례 분할되었는데, 그 분할의 경위는 가항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최종 분할 후 O 대 991.8㎡를 '이 사건 제1 토지', R 대 991.8㎡를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사. H, 원고의 가처분등기 말소

1) 1은 H와 원고를 상대로 하여 통영지원 2007카합29호 및 2007카합30호로 H와 원고가 각 가처분등기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신청하여(다만, 당시 O 대 1,983.6㎡에 관한 H의 가처분등기에 대하여는 취소를 신청하지 않았다), 2007. 2. 14. 및 2007. 2. 15. 통영지원으로부터 '위 법원이 2002. 1. 10. 및 2002. 3. 21.에 한 각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H, 원고의 각 가처분등기는 2007. 3. 20. 위 결정에 따라 각 말소되었다(다만, 당시 O 대 1,983.6㎡에 관한 H의 가처분등기는 2009. 11. 17.자 해제를 원인으로 2009. 11. 25. 말소되었다가 2010. 6. 4.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다시 회복등기가 마쳐졌다).

아. 피고 B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1) 피고 B은 2007. 5. 10. 분할 후 K와 O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제1, 2 토지로 분할 전 O 대 1,983.6㎡ 중 1,653/5,341 지분에 관하여는 2007. 5. 10. 접수 제20700호, 3,688/5,341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접수 제20701호, 이하 '피고 B의 본등기'라고 한다).

2) 피고 B의 본등기에 따라 원고와 H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되었다. 다만, 이 사건 제1, 2 토지로 분할 전 O 대 1,983.6㎡에 관한 H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7. 5. 10. 직권말소되었다가 2007. 5. 29.경 다시 직권말소통지등기가 말소되어 결국 H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자. 그 후 소유권의 변동 상황

1) 이 사건 제1, 2 토지

피고 B이 본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제1, 2 토지로 분할 전 O 중 피고 B의 2,671/5,341 지분에 관하여 2007. 5. 16. 접수 제21505호로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0. 9. 피고 D의 소유 지분이 2,039.17/5,341 지분으로 경정되었다. 또한 피고 B의 2,670/5,341 지분에 관하여 2007. 5. 16. 접수 제21506호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7. 10. 9. 피고 C의 소유 지분이 1,012.83/5,341로 경정되었다.

그에 따라 2007. 10. 9. 당시 이 사건 제1, 2 토지로 분할 전 O 토지는 피고 D이 2,039.17/5,341, 피고 C가 1,012.83/5,341, M가 2,289/5,341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제2 토지

피고 F는 2010. 11. 16. 최종 분할 후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M 지분 전부(2,289/5,341), 피고 C 지분 전부(1,012.83/5,341)를 이전받아 3,301.83/5,34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당시 이 사건 제2 토지는 피고 D이 2,039.17/5,341, 피고 F가 3,301.83/5,341 지분을 각 소유하였다.

차. H와 원고의 피고들, G를 상대로 한 소송과 그 후의 경과

1) H와 원고는 2017. 2. 2. 통영지원 2017가합45호로 피고들과 G를 상대로 하여, 'H와 원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H와 원고의 각 가처분등기에 의하여 그 순위가 보전되었으므로, 그 후에 마쳐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실행되었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 아니어서 회복되어야 하고, 오히려 피고 B와 L의 각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가 H와 원고의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들과 G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제1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2) 통영지원은 2017. 9. 7. '① H의 소 중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② 분할 후 토지 중 나머지 토지에 관한 H와 원고의 청구,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며(피고들과 G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중 H에 대하여는 1,983.48/5,341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2,644.63/5,341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하라는 내용인데, 인용된 말소 지분은 별지 제3 표 기재와 같다), ③ H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통영지원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의 2017. 12. 14. 항소기각 판결 선고를 거쳐, 2018. 1. 4. 확정되었다.

3) 원고와 H는 피고 F를 상대로, 통영지원 2018가단519호로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피고 F의 2010. 11. 16.자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제2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2018. 6. 19. 위 법원으로부터 '① H의 소는 각하하고, ② 피고 F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토지 중 2,678,560.6029/28,526,281 지분에 관하여 2010. 11. 16.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③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위 각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2019. 3. 25. 피고 D와 C의, 2019. 6. 11. 피고 B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지분이 경정되었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F의 전 소유자인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이 경정됨에 따라 2019. 3. 25. 피고 F의 지분이 14,956,513.4271/28,526,281로 경정되었다. 원고는 2019. 6. 11.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회복등기를 마쳤다(등기부상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각 2,644.63/5,341 지분).

가. 원고의 소유권 양도 및 현재 지분 소유상황

1) 원고는 2019. 7. 5.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에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 2019. 7. 1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S에 이전된 지분은 이 사건 제1 토지 중 9,102,056.1829/28,526,281이고, 이 사건 제2 토지 중 7,030,153.5571/28,526,281이다.

2) 이 사건 제1, 2 토지의 현재 지분 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분모: 28,526,281).

이 사건 제1 토지		이 사건 제2 토지	
소유자	소유 지분		현 소유
피고 B	1,041,257.2029	피고 B	1,041,257.2029
M	12,225,549	피고 F	14,956,513.4271
피고 C	2,730,964.4271	S	7,030,153.5571
S	9,102,056.1829	피고 D	5,498,356.8129
피고 D	3,426,454.1871		
합계	28,526,281	합계	28,526,28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라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가처분등기에 의하여 그 순위가 보전되었으므로, 그 후에 마쳐진 피고 B와 L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실행되었더라도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 아니어서 회복되어야 하고, 오히려 피고 B와 L의 각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가 원고의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원고-1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회복하여야 할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은 2,644.63/5,341이므로 이를 계산하면 14,124,968.83/28,526,281이다. 그런데, 원고가 S에게 원고의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음에도 S가 취득한 지분은 ①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9,102,056.1829/28,526,281로서, 5,022,912.6471/28,526,281이 부족하므로 피고 B, C, D로부터 각 지분별로 안분한 지분을 회수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7,030,153.5571/28,526,281로서, 7,094,815.2729/28,526,281이 부족하므로 피고 F(피고 C로부터 이전받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 B으로부터 각 지분별로 안분한 지분을 회수하여야 하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안분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는 진정한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예비적으로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본다.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참조).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앞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제1, 2 전소를 제기하여 그 중 일부가 인용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 사건 제1, 2 전소는 확정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제1, 2 전소에서 각 기각된 청구 부분을 다시 소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 2 전소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동일한 이 사건 소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제1, 2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형식적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

별지1.

부동산의 표시

1. 거제시 O 대 991.8㎡
2. 거제시 R 대 991.8㎡. 끝.

별지2.

말소(회복) 지분표

부동산	피고	등기접수번호	말소(회복)지분	백분율(%)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2019. 3. 25. 접수 제10278호	$\frac{2390825.82798}{28526281}$	8.38113
		2019. 3. 25. 접수 제10277호	$\frac{1905544.31233}{28526281}$	6.67996
		2019. 6. 11. 접수 제20414호 2019. 6. 13. 접수 제20737호	$\frac{726542.506724}{28526281}$	2.54692
	소계		$\frac{5022912.64703}{28526281}$	17.6080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2010. 11. 16. 접수 제49957호 2019. 3. 25. 접수 제10269호	$\frac{2090019.32791}{28526281}$	7.3266
		2019. 3. 25. 접수 제10278호	$\frac{4207917.13611}{28526281}$	14.751
		2019. 6. 11. 접수 제 20414호 2019. 6. 13. 접수 제20737호	$\frac{796878.808729}{28526281}$	2.7934
	소계		$\frac{7094815.27274}{28526281}$	24.87114

별지3.

말소지분표(통영지원 2017가합45)

부동산	과목	등기 접수 번호 ¹⁾	말소 상대방	말소 지분	계산식
K 대 1,043.6 ㎡	B	2007. 5. 10. 접수 제20698호	A	$\frac{4371573.39}{28526281}$	$\frac{1653}{5341} \times \frac{2644.63}{5341}$
			H	$\frac{3278692.44}{28526281}$	$\frac{1653}{5341} \times \frac{1983.48}{5341}$
	B	2007. 5. 10. 접수 제20699호	A	$\frac{9753395.44}{28526281}$	$\frac{3688}{5341} \times \frac{2644.63}{5341}$
			H	$\frac{7315074.24}{28526281}$	$\frac{3688}{5341} \times \frac{1983.48}{5341}$
이 사건 제1 토지	D	2007. 5. 16. 접수 제21505호	A	$\frac{5392850.1571}{28526281}$	$\frac{2039.17}{5341} \times \frac{2644.63}{5341}$
	C	2007. 5. 16. 접수 제21506호	A	$\frac{2678560.6029}{28526281}$	$\frac{1012.83}{5341} \times \frac{2644.63}{5341}$
	B	2007. 5. 10. 접수 제20700호	A	$\frac{4371573.39}{28526281}$	$\frac{1653}{5341} \times \frac{2644.63}{5341}$
		2007. 5. 10. 접수 제20701호	A	$\frac{3699837.37}{28526281}$	$\frac{1399}{5341} \times \frac{2644.63}{5341}$
P 대 1,652.8 ㎡	G	2008. 9. 24. 접수 제43852호	A	$\frac{2644.63}{10682}$	$\frac{1}{2} \times \frac{2644.63}{5341}$
			H	$\frac{1983.48}{10682}$	$\frac{1}{2} \times \frac{1983.48}{5341}$
	F	2008. 9. 24. 접수 제43852호	A	$\frac{2644.63}{10682}$	$\frac{1}{2} \times \frac{2644.63}{5341}$
			H	$\frac{1983.48}{10682}$	$\frac{1}{2} \times \frac{1983.48}{5341}$
	B	2007. 5. 10. 접수 제20698호	A	$\frac{4371573.39}{28526281}$	$\frac{1653}{5341} \times \frac{2644.63}{5341}$
			H	$\frac{3278692.44}{28526281}$	$\frac{1653}{5341} \times \frac{1983.48}{5341}$
		2007. 5. 10. 접수 제20699호	A	$\frac{9753395.44}{28526281}$	$\frac{3688}{5341} \times \frac{2644.63}{5341}$
			H	$\frac{7315074.24}{28526281}$	$\frac{3688}{5341} \times \frac{1983.48}{5341}$
Q 대 661㎡	B	2007. 5. 10. 접수 제20698호	A	$\frac{4371573.39}{28526281}$	$\frac{1653}{5341} \times \frac{2644.63}{5341}$
			H	$\frac{3278692.44}{28526281}$	$\frac{1653}{5341} \times \frac{1983.48}{5341}$

1)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의 표기는 생략

이 사건 제2 토지	B	2007. 5. 10. 접수 제20699호	A	$\frac{9753395.44}{28526281}$	$\frac{3688}{5341} \times \frac{2644.63}{5341}$
			H	$\frac{7315074.24}{28526281}$	$\frac{3688}{5341} \times \frac{1983.48}{5341}$
	D	2007. 5. 16. 접수 제21505호	A	$\frac{5392850.1571}{28526281}$	$\frac{2039.17}{5341} \times \frac{2644.63}{5341}$
	C	2007. 5. 16. 접수 제21506호	A	$\frac{2678560.6029}{28526281}$	$\frac{1012.83}{5341} \times \frac{2644.63}{5341}$
	B	2007. 5. 10. 접수 제20700호	A	$\frac{4371573.39}{28526281}$	$\frac{1653}{5341} \times \frac{2644.63}{5341}$
		2007. 5. 10. 접수 제20701호	A	$\frac{3699837.37}{28526281}$	$\frac{1399}{5341} \times \frac{2644.63}{5341}$